

## ◎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4-537호

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‘행정절차법’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01월 12일

문화체육관광부장관

###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#### 1. 개정이유

청소년의 신분증 위조·변조 또는 도용으로 PC방 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인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(' 24.3.22. 시행)됨에 따라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.

#### 2. 주요내용

##### 가. 청소년의 신분증 위·변조 등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기준 신설(안 26조)

- 1) PC방 영업자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과 관련하여 청소년이 신분증 위·변조·도용 및 폭행·협박 등을 통하여 그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정을 받은 경우 PC방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

##### 나. PC방 사업자의 준수사항 신설에 따라 이를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조항 신설(안 별표5)

- 1) PC방 영업자는 이용자가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준수사항 신설(법률 제28조제5의2)에 따라 이를 위반 시 적용할 행정처분 기준 조항 신설

위반사항	행정처분기준			
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위반	4차 위반
5의2)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자가 이용자가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게임물을 이용하게 한 경우	경고	영업정지 5일	영업정지 10일	영업정지 1개월

#### 3. 의견제출

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(참조: 게임콘텐츠산업과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서 제출

- 제출자의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-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
개정안	수정안	의견

나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: (우편번호 30119)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
- 전자우편: ljw99@korea.kr
- 팩스: 044-203-2446

4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(www.mcst.go.kr) 자료공간-법령자료-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,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(전화 044-203-2246, 팩스 044-203-3465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